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6715호 2023년 3월 6일(월)

경 상 북 도

■ 고 시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3-60호) ····· 5

회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지방하천(여남천, 칠성천) 지정 해제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3-61호) ····· 6

○ 지방하천 남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3-62호) ····· 8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3-63호) ····· 11

■ 공 고

○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3-437호) ····· 13

○ 행정심판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3-441호) ····· 18

시 군

■ 고 시

○ 구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미시 고시 제2023-55호) ····· 21

○ 상주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농업기술센터)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상주시 고시 제2023-53호) ····· 24

○ 경산 도시관리계획(대신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3-39호) ····· 27

○ 경산 도시관리계획(시가지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3-40호) ····· 31

■ 공 고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53)]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안동시 공고 제2023-426호) ····· 82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14호) ····· 86

○ 하천점용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21호) ····· 88

○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22호) ····· 90

◈◈◈

경상북도 고시 제2023-60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6.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지방하천 (이안천)	교 량 설 치	〈무명교〉 종단교량 L=19.65m, B=5.0m (영구 103㎡) (일시 317㎡)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 247-1번지 일원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장 (농촌개발과장)	(영구) 허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2024.2.28.까지

경상북도 고시 제2023-61호

지방하천(여남천, 칠성천) 지정 해제 고시

지방하천 여남천, 칠성천에 대한 「하천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지정 해제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하천의 지정 해제 고시

지방하천 여남천, 칠성천에 대해 「하천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하천 명칭	하천 등급	구분	하 천 구 간			해제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여남천	지방하천	당초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동해)	4.25	포항시에서 하수관로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기능의 상실에 따라 지방하천 지정 해제
		변경	-	-	-	

하천 명칭	하천 등급	구분	하 천 구 간			해제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칠성천	지방하천	당초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경북 포항시 북구 여남동(동해)	4.50	포항시에서 하수관로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기능의 상실에 따라 지방하천 지정 해제
		변경	-	-	-	

※ 지정 해제일 : 고시일과 같음

※ 열람장소

경상북도 하천과(054-880-4068), 포항시 생태하천과(054-270-3525) 끝.

경상북도 고시 제2023-62호

지방하천 남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지방하천 남천에 대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목적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하천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의 조사·분석과 주변 여건변화를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함으로써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하천관리방안의 지침으로 활용코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 현황(변경없음)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변경없음)

라.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하천명칭	지 점		기본홍수량(m3/s)		계획홍수량(m3/s)		계획홍수위(EL.m)		계획하폭(m)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남천	No.0+000	위천(지방) 합류점	825	825	825	825	89.57	89.57	206	206	
	No.1+400	앞걸천(소) 합류전	825	825	825	825	92.28	92.28	155	155	
	No.2+200	불골천(소) 합류전	825	825	825	825	93.52	93.52	115	115	
	No.3+500	북방천(소) 합류전	825	825	825	825	96.68	96.63	142	142	취수보 이설
	No.5+500	사창천 합류전	555	555	555	555	101.51	101.51	133	133	
	No.5+800	여실천(소) 합류전	555	555	555	555	102.17	102.17	101	101	
	No.7+300	신매천(소) 합류전	555	555	555	555	109.06	109.06	102	102	
	No.7+900	삽실천(소) 합류전	555	555	555	555	111.26	111.26	105	105	
	No.9+200	마시천(소) 합류전	555	555	555	555	116.31	116.31	81	81	
	No.10+500	명마천(소) 합류전	475	475	475	475	122.79	122.79	82	82	
	No.11+500	신천(소) 합류전	434	434	434	434	128.22	128.22	83	83	
	No.13+000	신원천(소) 합류전	396	396	396	396	138.32	138.32	60	60	
	No.15+300	동림천(소) 합류전	322	322	322	322	159.59	159.59	56	56	
	No.17+870	둔덕천(소) 합류전	130	130	130	130	198.76	198.76	58	58	
	No.19+955	남천 기점	130	130	130	130	292.71	292.71	69	69	

※ 기존 취수보(No.3+331) 철거후 취수보 이설(No.3+500)에 따른 계획홍수위 변경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변경없음)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하천과) 및 하천의 관할지역인 군위군(안전관리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경상북도 하천과(054-880-4068), 군위군 안전관리과(054-380-7590) 끝.

경상북도 고시 제2023-63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6.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지방하천 (초곡천)	교 량 개 체	〈세월3교〉 L=57.4m, B=14.0m (영구 1,660㎡) (일시 1,689㎡)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396-10번지 일원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모전동)	문경시장 (일자리 경제과장)	(영구) 허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2024.12.31.까지

◈◈◈

경상북도 공고 제2023-437호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2016.12.15.)된 이후에 등재된 세계유산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

2. 주요내용: 제2조제2호, 제2조제1호, 제13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

가. 기 등재된 세계유산 및 향후 등재될 세계유산이 포함되도록 개정

- 제2조(정의)제2호 내용 수정

나. 명칭 및 문구 수정

- 제2조(정의)제1호, 제13조(분과위원회 설치 등)제1항, 제22조(경비보조 등)제3항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문화유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전화: 054-880-3172, Fax: 054-880-3179, 이메일: kmshy99@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석굴암·불국사’, ‘경주역사유적지구’,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양동’”을 “경상북도 소재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신라유적”을 “역사유적”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기타”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로,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1.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2. “경상북도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된 ‘석굴암·불국사’, ‘경주역사유적지구’,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양동’을 말한다.	2. ---------- 경상북도 소재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3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라유적 분과위원회와 역사마을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별 분장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역사유적---------- 다음 각 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경비보조 등) ①·② (생 략)	제22조(경비보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타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관련법령발췌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세계유산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7587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 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 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 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3-441호

행정심판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청구인의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재결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서류의 송달),「민사소송법」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및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3. 3. 6.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3. 3. 3. ~ 2023. 3. 17.(15일)

2. 공고방법 :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3. 공고사항

가. 제 목 :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나.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민사소송법」제194조제1항 및 제195조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구 분	사건번호	사 건 명	청구인
재결서	경북행심 2022-34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처분 취소청구	주식회사 제이케이종합건설 대표이사 정문규

4.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서류를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북도청 법무혁신담당관(☎054-880-22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구미시 고시 제2023-55호

구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미시 구평동 448-1번지 외 1필지 일원 구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6.

구 미 시 장

<table>
<tr><td>1. 사업시행지의 위치</td><td>○ 구미시 구평동 448-1, 449-1번지</td></tr>
<tr><td>2. 사업의 종류 및 명칭</td><td>○ 구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td></tr>
<tr><td>3. 사업의 규모</td><td>
<table>
<tr><th>구 분</th><th>시설명</th><th>규모 및 내역</th><th>비고</th></tr>
<tr><td>도시계획시설</td><td>주차장</td><td>· 연면적 : 4,941.19㎡</td><td></td></tr>
</table>
</td></tr>
</table>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구미시장 ○ 주 소 : 송정대로 55
5. 사업시행기간	○ 2023. 3. 6. ~ 2024. 6. 30.
6. 사용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과 같음

※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교통정책과(054-480-6264)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끝.

【별첨】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면적 : ㎡

번호	위치		지목	토지대장상 면적	소유자		비고
	시. 동	지 번			주 소	성 명	
계				2,495.7			
1	구미시	구평동	잡	1,244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	
2	구미시	구평동	잡	1,251.7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	

상주시 고시 제2023-53호

상주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농업기술센터)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상주시 초산동 720-1번지 일원의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건립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농업기술센터)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6.

상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상주시 초산동 72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상주시농업기술센터)사업

나. 사업의 명칭: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건립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건축물대장 정정에 따른 건축면적 및 건축연면적 정정

구 분	기 정		증 감	비 고
	당 초	변 경		
건축면적(㎡)	7,817.76	8,446.35	증) 628.59	건축물대장 건축면적 표기오류로 인한 정정
건축연면적(㎡)	9,274.32	10,386.69	증) 1,112.37	건축물대장 건축연면적 표기오류로 인한 정정

나.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연구시설) 증설

- 금회사업면적(A)= 325㎡

부지면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39,368	-	39,368	
건축면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8,446.35	증) 342.45	8,788.8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건립
건축연면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10,386.69	증) 325.00	10,711.69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건립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3. 9. 30.

5. 사업시행자

가. 주 소: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남성동 140-3)

나. 성 명: 상주시장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동	지번		(㎡)	(㎡)				주소	성명	
1	초산동	570	답	5,415	5,415		상주시				
2	초산동	571	답	903	903		상주시				
3	초산동	571-2	답	339	339		상주시				
4	초산동	713-1	답	3,436	3,436		상주시				
5	초산동	720	답	1,666	1,666		상주시				
6	초산동	720-1	대	20,462	20,462		상주시				금회증축 부지
7	초산동	721	전	1,280	1,280		상주시				
8	초산동	863	도	4,066	451		국(농수산부)				
9	초산동	863-1	구	17,681	1,057		국(농수산부)				
10	초산동	883-1	도	1,126	107		국(농수산부)				
11	초산동	938	잡	447	447		상주시				
12	초산동	720-2	답	1,746	1,746		상주시				
13	초산동	721-1	전	2,059	2,059		상주시				
계				60,626	39,368						

※ 관계도서는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경산시 고시 제2023-39호

경산 도시관리계획(대신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경산시 백천동 137번지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대신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6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임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대 신 대학교	대학교	경산시 백천동 137번지 일원	48,049	감) 1,102	46,947	경북고시 제149호 (1984.8.2)	

■ 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대 신 대학교	○ 면적 축소 A = 48,049㎡ → 46,947㎡ 감) 1,102㎡	○ 학교 담장밖 미매입 국·공유지 제척에 따른 면적 축소

나.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0,393	감) 3,446	46,947		
1	녹지 및 기타	경산시 백천동 137번지 일원	22,874	감) 5,265	17,609	경북고시 제2008-296호 (2008.6.19)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2	교사시설	〃	11,702	-	11,702	경북고시 제2008-296호 (2008.6.19)	
3	운동시설	〃	4,950	증) 882	5,832	경북고시 제2008-296호 (2008.6.19)	
4	도로시설	〃	8,987	감)8	8,979	경북고시 제2008-296호 (2008.6.19)	
5	주차장시설	〃	1,880	증) 945	2,825	경북고시 제2008-296호 (2008.6.19)	

■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학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대신대학교	○ 녹지 및 기타 A = 22,874㎡→17,609㎡ [감 5,265㎡]	○국·공유지 제척, 주차장 및 풋살장 조성에 따른 면적축소
2		○ 교사시설부지 A = 11,702㎡ [변경없음]	-
3		○ 운동시설 A = 4,950㎡→5,832㎡ [증 882㎡]	○풋살장 조성에 따른 면적 증가
4		○ 도로시설 A = 8,987㎡→8,979㎡ [감 8㎡]	○중로1-12호선 결정(변경) 결과 반영

도면 표시 번호	학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		○ 주차장시설 A = 1,880㎡→2,825㎡ [증 945㎡]	○주차장 부지 추가 조성에 따른 면적 증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면 : 별첨(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 053-810-55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경산시 고시 제2023-40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시가지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산시 중산동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중산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舊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6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경산시 중산동 일원의 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 종전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시가지조성사업 변경 및 중산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

ㆍ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경산 도시관리계획(시가지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총괄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05,759.4	-	805,759.4	100.0	
주거지역	소 계	363,703.9	-	363,703.9	45.1	
	제2종일반주거지역	70,891.6	-	70,891.6	8.8	
	제3종일반주거지역	4,752.0	-	4,752.0	0.6	
	준주거지역	288,060.3	-	288,060.3	35.8	
상업지역	소 계	265,509.0	-	265,509.0	33.0	
	일반상업지역	265,509.0	-	265,509.0	33.0	
녹지지역	소 계	176,546.5	-	176,546.5	21.9	
	자연녹지지역	176,546.5	-	176,546.5	21.9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미관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5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광로3-1호선	2,400	160	15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지구내

다. 시가지조성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동 일원	805,759.4	-	805,759.4	

라. 시가지조성사업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도로 (변경없음)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합계		26	7,285	142,709.1	13	4,421	98,210.3	5	1,887	37,996.8	8	977	6,502.0
일반도로	계	14	6,391	137,245.1	8	4,396	97,960.3	5	1,887	37,996.8	1	108	1,288.0
	대로	6	3,252	82,200.4	2	1,426	45,396.6	4	1,826	36,803.8	-	-	-
	중로	8	3,139	55,044.7	6	2,970	52,563.7	1	61	1,193.0	1	108	1,288.0
보행자 전용도로	계	12	894	5,464.0	5	25	250.0	-	-	-	7	869	5,214.0
	소로	12	894	5,464.0	5	25	250.0	-	-	-	7	869	5,214.0

※ 경산시 고시 제2017-95호(2017.7.3.), 제2017-108호(2017.8.3.), 제2018-62호(2018.5.14.), 제2019-19호(2019.2.14.), 제2019-53호(2019.5.7.), 제2021-7호(2021.1.21.), 제2021-74호(2021.4.29.), 제2021-203호(2021.12.23.) 고시 내용 중 착오로 인한 1류 도로 연장 합계, 1류 일반도로 연장 계 오기 정정

- 기정) : 1류 도로 합계) 4,427㎡, 1류 일반도로 계) 4,402㎡
- 정정) : 1류 도로 합계) 4,421㎡, 1류 일반도로 계) 4,396㎡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2	35	주간선	17,395	중산구역계	대로2-6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지구내 205m -가감속차로 -버스베이
기정	대로	1	6	36~36.8	보조간선	1,221	광로3-1호선	대로1-2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가감속차로 510㎡ 포함
기정	대로	2	5	30~50 (15~30)	주간선	1,551	광로3-1호선	대로2-6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지구내 667m -가감속차로 650㎡ 포함
기정	대로	2	6	30 (15)	주간선	830	대로1-2호선	대로2-5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지구내 675m -가감속차로 650㎡ 포함
기정	대로	2	13	30	집산	242	대로2-5호선	대로1-6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대로	2	14	30	집산	242	대로2-6호선	대로1-6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중로	1	16	20	집산	164	중로1-18호선	대구시 구역계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중로	1	18	20	집산	1,430	대로2-5호선	대로1-6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중로	1	22	20 (5~10)	국지	564	대로2-5호선	중로1-18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4-275호 (2004.10.15)	-지구내 폭원 5~10m, 연장 564m 포함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3	20	집산	79	중로1-18호선	중로2-42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중로	1	24	20	집산	300	대로1-6호선	대로2-14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중로	1	25	20	집산	433	대로2-14호선	대로2-13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중로	2	42	15~18	집산	61	중로1-23호선	중산동 623번지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중로	3	31	12	국지	108	중로1-18호선	대구시 구역계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소로	1	66	10	특수	5	대로1-2호선	C1획지 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1	67	10	특수	5	대로2-6호선	C1획지 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1	68	10	특수	5	대로2-6호선	C2-1획지 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1	69	10	특수	5	대로2-5호선	C3획지 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70	10	특수	5	대로2-5호선	C3획지 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3	4	6	특수	320	중로1-25호선	대로2-6호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소로	3	5	6	특수	326	중로1-25호선	대로2-5호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소로	3	355	6	특수	5	대로2-6호선	C1획지 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3	356	6	특수	37	중로1-24호선	대로1-6호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3	357	6	특수	5	대로2-5호선	C3획지 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3	358	6	특수	37	중로1-25호선	대로1-6호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3	397	6	특수	139	중로1-18호선	중산3근린공원	보행자 전용		경산시고시 제2014-72호 (2014.7.24)	

※ ( )의 폭원은 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폭원임

나)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6,056.0	–	6,056.0		
기정	19	노외주차장	경산시 중산동 639	3,554.4	–	3,554.4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20	노외주차장	경산시 중산동 633	2,501.6	–	2,501.6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다)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152,142.4	–	152,142.4		
기정	20	중산 공원	근린 공원	경산시 중산동 674、681	111,517.0	–	111,517.0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21	중산2 공원	근린 공원	경산시 중산동 653	13,588.6	–	13,588.6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27	중산3 공원	근린 공원	경산시 중산동 676	22,132.4		22,132.4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94	중산제1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경산시 중산동 642	1,886.7	-	1,886.7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95	중산제2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경산시 중산동 667	1,719.1	-	1,719.1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27	중산소공원	소공원	경산시 중산동 659	1,298.6	-	1,298.6	경산시고시 제2014-72호 (2014.7.24)	

라) 녹지 (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4	녹지	완충녹지	대로2-5호선, 대로2-6호선 변	5,258.3	-	5,258.3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폭5m

마) 광장 (변경없음)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8	광장	일반광장	경산시 중산동 636	1,852.4	-	1,852.4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바) 공공공지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0	공공공지	경산시 중산동 624-1	92.0	-	92.0	경산시고시 제2011-62호 (2011.10.13)	

사) 학교 (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51,424.0		51,424.0	-	
기정	20	학교	초등학교	경산시 중산동 660	15,539.7	-	15,539.7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29	학교	초등학교	경산시 중산동 677	17,476.3	-	17,476.3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11	학교	중·고등학교	경산시 중산동 678	18,408.0	-	18,408.0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아) 공공청사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공공청사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경산시 중산동 630-1	1,980.1	-	1,980.1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자) 유수지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	유수지	저류시설	경산시 중산동 631	6,469.5	-	6,469.5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중산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동 일원	805,759.4	-	805,759.4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① 용도지역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05,759.4	100.0	
주거지역	소 계	363,703.9	45.1	
	제2종일반주거지역	70,891.6	8.8	
	제3종일반주거지역	4,752.0	0.6	
	준주거지역	288,060.3	35.8	
상업지역	소 계	265,509.0	33.0	
	일반상업지역	265,509.0	33.0	
녹지지역	소 계	176,546.5	21.9	
	자연녹지지역	176,546.5	21.9	

② 용도지구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5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광로3-1호선	2,400	160	15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지구내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805,759.4	-	805,759.4	100.00	
주 거 용 지		18,447.4	-	18,447.4	2.29	
준 주 거 용 지		210,989.8	-	210,989.8	26.19	
상업·업무시설용지		189,336.6	-	189,336.6	23.50	
공공시설용지	소 계	369,988.7	-	369,988.7	45.92	
	공 공 청 사	1,980.1	-	1,980.1	0.25	
	공공업무시설	2,004.9	-	2,004.9	0.25	
	학 교	51,424.0	-	51,424.0	6.38	
	공 원	152,142.4	-	152,142.4	18.88	
	녹 지	5,258.3	-	5,258.3	0.65	
	광 장	1,852.4	-	1,852.4	0.23	
	공 공 공 지	92.0	-	92.0	0.01	
	유 수 지	6,469.5	-	6,469.5	0.80	
	주 차 장	6,056.0	-	6,056.0	0.75	
	도 로	142,709.1	-	142,709.1	17.71	
기타시설용지	소 계	16,996.9	-	16,996.9	2.11	
	문화및집회시설	6,419.7	-	6,419.7	0.80	
	사회복지시설	10,577.2	-	10,577.2	1.31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① 도로 (변경없음)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6	7,285	142,709.1	13	4,421	98,210.3	5	1,887	37,996.8	8	977	6,502.0
일반도로	계	14	6,391	137,245.1	8	4,396	97,960.3	5	1,887	37,996.8	1	108	1,288.0
	대로	6	3,252	82,200.4	2	1,426	45,396.6	4	1,826	36,803.8	-	-	-
	중로	8	3,139	55,044.7	6	2,970	52,563.7	1	61	1,193.0	1	108	1,288.0
보행자전용도로	계	12	894	5,464.0	5	25	250.0	-	-	-	7	869	5,214.0
	소로	12	894	5,464.0	5	25	250.0	-	-	-	7	869	5,214.0

※ 경산시 고시 제2017-95호(2017.7.3.), 제2017-108호(2017.8.3.), 제2018-62호(2018.5.14.), 제2019-19호(2019.2.14.), 제2019-53호(2019.5.7.), 제2021-7호(2021.1.21.), 제2021-74호(2021.4.29.), 제2021-203호(2021.12.23.) 고시 내용 중 착오로 인한 1류 도로 연장 합계, 1류 일반도로 연장 계 오기 정정

- 기정) : 1류 도로 합계) 4,427㎡, 1류 일반도로 계) 4,402㎡
- 정정) : 1류 도로 합계) 4,421㎡, 1류 일반도로 계) 4,396㎡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2	35	주간선	17,395	중산구역계	대로2-6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지구내 205m -가감속차로 -버스베이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6	36~36.8	보조간선	1,221	광로3-1호선	대로1-2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가감속차로 510㎡ 포함
기정	대로	2	5	30~50 (15~30)	주간선	1,551	광로3-1호선	대로2-6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지구내 667m -가감속차로 650㎡ 포함
기정	대로	2	6	30 (15)	주간선	830	대로1-2호선	대로2-5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지구내 675m -가감속차로 650㎡ 포함
기정	대로	2	13	30	집산	242	대로2-5호선	대로1-6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대로	2	14	30	집산	242	대로2-6호선	대로1-6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중로	1	16	20	집산	164	중로1-18호선	대구시 구역계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중로	1	18	20	집산	1,430	대로2-5호선	대로1-6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중로	1	22	20 (5~10)	국지	564	대로2-5호선	중로1-18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4-275호 (2004.10.15)	-지구내 폭원 5~10m, 연장 564m 포함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3	20	집산	79	중로1-18호선	중로2-42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중로	1	24	20	집산	300	대로1-6호선	대로2-14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중로	1	25	20	집산	433	대로2-14호선	대로2-13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중로	2	42	15~18	집산	61	중로1-23호선	중산동 623번지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중로	3	31	12	국지	108	중로1-18호선	대구시 구역계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소로	1	66	10	특수	5	대로1-2호선	C1획지 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1	67	10	특수	5	대로2-6호선	C1획지 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1	68	10	특수	5	대로2-6호선	C2-1획지 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1	69	10	특수	5	대로2-5호선	C3획지 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70	10	특수	5	대로2-5호선	C3획지 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3	4	6	특수	320	중로1-25호선	대로2-6호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소로	3	5	6	특수	326	중로1-25호선	대로2-5호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소로	3	355	6	특수	5	대로2-6호선	C1획지 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3	356	6	특수	37	중로1-24호선	대로1-6호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3	357	6	특수	5	대로2-5호선	C3획지 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3	358	6	특수	37	중로1-25호선	대로1-6호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3	397	6	특수	139	중로1-18호선	중산3근린공원	보행자 전용		경산시고시 제2014-72호 (2014.7.24)	

※ ( )의 폭원은 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폭원임

②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6,056.0	-	6,056.0		
기정	19	노외주차장	경산시 중산동 639	3,554.4	-	3,554.4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20	노외주차장	경산시 중산동 633	2,501.6	-	2,501.6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③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152,142.4	-	152,142.4		
기정	20	중산 공원	근린 공원	경산시 중산동 674、681	111,517.0	-	111,517.0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21	중산2 공원	근린 공원	경산시 중산동 653	13,588.6	-	13,588.6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7	중산3 공원	근린 공원	경산시 중산동 676	22,132.4		22,132.4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94	중산제1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경산시 중산동 642	1,886.7	-	1,886.7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95	중산제2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경산시 중산동 667	1,719.1	-	1,719.1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27	중산소 공원	소공원	경산시 중산동 659	1,298.6	-	1,298.6	경산시고시 제2014-72호 (2014.7.24)	

④ 녹지 (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4	녹지	완충 녹지	대로2-5호선, 대로2-6호선 변	5,258.3	-	5,258.3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폭5m

⑤ 광장 (변경없음)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8	광장	일반 광장	경산시 중산동 636	1,852.4	-	1,852.4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⑥ 공공공지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0	공공공지	경산시 중산동 624-1	92.0	-	92.0	경산시고시 제2011-62호 (2011.10.13)	

⑦ 학교 (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51,424.0		51,424.0	-	
기정	20	학교	초등학교	경산시 중산동 660	15,539.7	-	15,539.7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9	학교	초등학교	경산시 중산동 677	17,476.3	-	17,476.3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11	학교	중、고등학교	경산시 중산동 678	18,408.0	-	18,408.0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⑧ 공공청사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	공공청사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경산시 중산동 630-1	1,980.1	-	1,980.1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⑨ 유수지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8	유수지	저류시설	경산시 중산동 631	6,469.5	-	6,469.5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① 가구 및 획지의 규모의 조성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총계	-	805,759.4		805,759.4	
A1	A1	67,313.0	1	33,192.0	
			2	26,650.0	획지분할 최소면적 10,000㎡ 이상
			3	7,471.0	
A2	A2	116,430.0	1	106,273.0	획지분할 최소면적 13,000㎡ 이상
			2	10,157.0	획지분할 최소면적 3,000㎡ 이상
A3	A3	16,903.1	1	16,903.1	획지분할 최소면적 3,000㎡ 이상
A4	A4	2,787.7	1	2,787.7	획지분할 최소면적 800㎡ 이상
A5	A5	6,480.2	1	2,925.8	획지분할 최소면적 800㎡ 이상
			2	3,554.4	노외주차장
A6	A6	7,254.7	1	4,575.6	획지분할 최소면적 800㎡ 이상
			2	2,679.1	획지분할 최소면적 800㎡ 이상
A7	A7	4,873.9	1	2,372.3	획지분할 최소면적 800㎡ 이상
			2	2,501.6	노외주차장
B1	B1	60,751.4	1	18,447.4	획지분할 최소면적 8,000㎡ 이상
			2	6,419.7	문화 및 집회시설
			3	18,408.0	중、고등학교
			4	17,476.3	초등학교
B2	B2	10,577.2	1	10,577.2	사회복지시설
C1	C1	55,769.6	1	55,769.6	획지분할 최소면적 25,000㎡ 이상
C2	C2	48,767.9	1	33,228.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2	15,539.7	초등학교
C3	C3	68,825.3	1	68,825.3	획지분할 최소면적 30,000㎡ 이상
C4	C4	23,367.4	1	19,382.4	
			2	1,980.1	공공청사
			3	2,004.9	공공업무시설
C5	C5	7,134.3	1	7,134.3	
기 타		308,523.7		308,523.7	도로, 녹지, 공원, 광장, 공공공지, 유수지 등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① 주거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B1-1	B1-1	용도	•허용용도 – 단독형 집합주택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자 전용의 비영리 공동이용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배치	•건축물 배치는 경사지형을 고려한 자연지형 순응형 건축배치를 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권장	
		형태	•건축물 1동의 길이는 기준층의 호수를 기준으로 하여 6호연립 이하로 건축 •건축물을 'ㄱ' 자형 또는 곡선형으로 배치하거나 층고차이가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8호 연립 까지 허용 •지붕형태는 구배가 3/10~7/10이하의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함	
		색채(권장)	•외벽의 색상은 순색(Chromaticness=100)에 가까운 색, 흰색(Whiteness=0)에 가까운 색, 검정(Blackness=100)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인접하는 색과의 색차를 줄이도록 권장 •원경에서의 통일감과 근경에서의 변화감을 도모하는 색채계획을 위하여 기조색을 통일하고 강조색을 사용토록 권장 •권역별 차별성을 위한 강조색은 작은 면적과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등에 사용토록 권장 •발코니와 난간의 색채는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권장. •시각적 초점이 될 수 있는 주택의 측벽에 경산시의 정체성과 단지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처리를 권장	
		건축선	•20m도로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획지 경계 및 12m 도로변에서 3m 건축한계선 지정	

②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1-2 C1 C2-1 C3 C4-1 C5	A1-2 C1 C2-1 C3 C4-1 C5	용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를 불허한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단 C1, C2-1, C3획지에 공동주택건설 시 280%이하)	
		높이	•최고층수 - 35층	
		배치	•남향위주 배치하며, 개방감 확보를 위한 탑상형 권장 •지형·지세, 지구내 발생단차 등을 고려하여 변화감 있는 층고계획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이 형성토록 권장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토록 건축배치 권장	
		형태	•판상형 건축물 1동의 길이는 15층 이하의 경우 80m 이하, 16층 이상의 경우 4호 연립 또는 60m 이하로 제한 •지붕은 경사지붕(구배가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 또는 장식구조물로 특화한 평지붕을 하도록 하며, 지붕장식물 업라이팅 등 야간경관조명을 권장 •필로티 설치(권장)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색채(권장)	•외벽의 색상은 순색(Chromaticness=100)에 가까운 색, 흰색(Whiteness=0)에 가까운 색, 검정(Blackness=100)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인접하는 색과의 색차를 줄이도록 권장 •원경에서의 통일감과 근경에서의 변화감을 도모하는 색채계획을 위하여 기조색을 통일하고 강조색을 사용토록 권장 •권역별 차별성을 위한 강조색은 작은 면적과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등에 사용토록 권장 •건축물의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	
		건축선	•완충녹지 및 유수지경계에서 5m 건축한계선 지정 (C1, C2-1, C3, C4-1) •도로(폭원 40m)변에 15m 건축한계선 지정 (A1-2) •도로(폭원 20m)변에 4~7m 건축한계선 지정 (C2-1, C3) •도로(폭원 36.8m)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A1-2, C1, C4-1, C5) •도로(폭원 30m)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C1, C2-1, C3, C4-1) •도로(폭원 20m)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C1, C4-1, C5) •도로(폭원 20m)변에 2m 건축한계선 지정 (A1-2) •도로(폭원 12m)변에 3m 건축한계선 지정 (C5) •보행자전용도로변에 3m 건축한계선 지정 (C2-1, C3) •획지경계부에 3m 건축한계선 지정 (C2-1, C4-1) •사업대상지 경계부에서 3m 건축한계선 지정 (A1-2, C5)	

③ 상업 · 업무용지 (변경있음)

<table>
<tr><th>도면
번호</th><th>위치
(가구
번호)</th><th>구분</th><th>계 획 내 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4">A1-1
A4
A5-1
A6-1
A6-2
A7-1</td><td rowspan="4">A1-1
A4
A5-1
A6-1
A6-2
A7-1</td><td>용도</td><td>•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불허용도
<table><tr><th>구 분</th><th>불허용도</th></tr><tr><td>A1-1</td><td>- 단독주택, 공동주택(주상복합)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td></tr><tr><td>A4,
A5-1,
A6-1,
A6-2,
A7-1</td><td>- 단독주택, 공동주택(주상복합)
- 위락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td></tr></table>※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를 불허한다</td><td></td></tr>
<tr><td>건폐율</td><td>•50% 이하 : A1-1
•60% 이하 : A4, A5-1, A6-1, A6-2, A7-1</td><td></td></tr>
<tr><td>용적률</td><td rowspan="2"><table><tr><th>구 분</th><th>용 적 률</th><th>최 고 층 수</th></tr><tr><td>A1-1</td><td>800%이하</td><td>30층</td></tr><tr><td>A4, A5-1,
A6-1, A6-2,
A7-1</td><td>500%이하</td><td>10층</td></tr></table></td><td rowspan="2"></td></tr>
<tr><td>높이</td></tr>
</table>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배치	-	
		형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이나 투시형셔터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A4, A5-1, A6-1, A6-2, A7-1)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이나 장식물 처리로 옥상구조물을 차폐하여야 함.(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아름다운 야간경관 연출을 위하여 지붕장식물 업라이팅 등 야간경관조명을 권장.	
		색채(권장)	•기조색은 원색과 가까운색(채도가 높은색)은 금지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선택을 사용하도록 권장 •원경에서의 통일감과 근경에서의 변화감을 도모하는 색채계획을 위하여 기조색을 통일하고 강조색을 사용토록 권장 •보조색은 기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하고, 기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권장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	
		건축선	•북측 광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 15m 지정 (A1-1) •동측 대로2-5호선변 건축한계선 4~10m 지정 (A1-1) •도로(폭원 36.8m)변에 2m 건축한계선 지정 (A4, A5-1, A6-1, A6-2, A7-1) •도로(폭원 30m)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A5-1, A6-1, A7-1) •도로(폭원 20m)변에 2m 건축한계선 지정 (A1-1, A4, A5-1, A6-1, A6-2, A7-1)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광장변에 3m 건축한계선 지정 (A6-1, A6-2) •보행자전용도로변에 3m 건축한계선 지정 (A4, A6-2) •도로모퉁이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A4) •주차장획지선에서 3m 건축한계선 지정 (A5-1, A7-1) ※ 건축한계선은 「건축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선에 해당함	
A2-1	A2-1	용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를 불허한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65층	
		배치	•단조롭고 획일적인 형태는 지양하며, 다양한 공간구성 및 Land Mark적인 형태로 계획 •주변지역에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탑상형 건축물 권장 •주상복합을 건축할 경우 업무·판매유도죤이 지정된 곳에서는 주상복합시설 중 상업시설 연면적의 70%이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상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잔여부분은 연도형 가로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간선가로변에 가급적 배치토록 하여 상업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중심부 랜드마크타워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2동 이하로 한다.	
		형태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이나 장식물 처리로 옥상구조물을 차폐하여야 함.(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아름다운 야간경관 연출을 위하여 지붕장식물 업라이팅 등 야간경관조명을 권장.	
		색채 (권장)		•기조색은 원색과 가까운색(채도가 높은색)은 금지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선택을 사용하도록 권장 •원경에서의 통일감과 근경에서의 변화감을 도모하는 색채계획을 위하여 기조색을 통일하고 강조색을 사용토록 권장 •보조색은 기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하고, 기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권장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	
		건축선	기정	•도로(폭원 36.8m, 20m)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A2-2블록의 획지분할선에서 3m 건축한계선 지정 •중산공원 경계부에서 15m 건축한계선 지정 •획지 중심부 20m 공공보행통로변에 4m를 이격하여, 벽면한계선(높이 10m 이상) 지정	
			변경	•도로(폭원 36.8m, 20m)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A2-2블록의 획지분할선에서 3m 건축한계선 지정 •중산공원 경계부에서 15m 건축한계선 지정	벽면한계선 폐지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2-2	A2-2	용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방송국 및 방송관련시설과 불허용도외의 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를 불허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35층	
		배치	•단조롭고 획일적인 형태는 지양하며, 다양한 공간구성 및 Land Mark적인 형태로 계획	
		형태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이나 장식물 처리로 옥상구조물을 차폐하여야 함.(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아름다운 야간경관 연출을 위하여 지붕장식물 업라이팅 등 야간경관조명을 권장.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색채 (권장)	•기조색은 원색과 가까운색(채도가 높은색)은 금지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선택을 사용하도록 권장 •원경에서의 통일감과 근경에서의 변화감을 도모하는 색채계획을 위하여 기조색을 통일하고 강조색을 사용토록 권장 •보조색은 기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하고, 기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권장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	
		건축선	•20m 도로변에 4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A2-1블록의 획지분할선에서 3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중산공원 경계부에서 15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A3	A3	용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주상복합)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를 불허한다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35층	
		배치	•단조롭고 획일적인 형태는 지양하며, 다양한 공간구성 및 Land Mark적인 형태로 계획	
		형태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이나 장식물 처리로 옥상구조물을 차폐하여야 함.(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아름다운 야간경관 연출을 위하여 지붕장식물 업라이팅 등 야간경관조명을 권장.	
		색채(권장)	•기조색은 원색과 가까운색(채도가 높은색)은 금지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선택을 사용하도록 권장 •원경에서의 통일감과 근경에서의 변화감을 도모하는 색채계획을 위하여 기조색을 통일하고 강조색을 사용토록 권장 •보조색은 기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하고, 기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권장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	
		건축선	•도로(폭원 36.8m, 20m)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공원변에 3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A3) •도로(대1-2호선) 경계부에서 5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A3)	

※ A3가구 건축선에 관한 계획 오기 정정 : 도로(대로1-2호선) 경계부에서의 건축한계선 기정) 2~5m → 정정) 5m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1-3	A1-3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단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및 종류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및 경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를 불허한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30층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20m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 2m 지정	

④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 학교, 주차장) (변경없음)

■ 공공청사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C4-2	C4-2	용도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등)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10층	
		배치	–	
		형태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 •개방감을 주기 위한 투시형 셔터를 1층 벽면의 1/2이상에 설치토록 권장 •지붕형태는 구배가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의 경사지붕을 하도록 권장	
		색채(권장)	•외벽의 색상은 순색(Chromaticness=100)에 가까운 색, 흰색(Whiteness=0)에 가까운 색, 검정(Blackness=100)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인접하는 색과의 색차를 줄이도록 권장 •강한 그래픽, 현란한 색채 등의 사용은 금지 •지붕의 색채는 기조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담장색채는 건축물의 외장색과 색차가 거의 없으면서 돌출되지 않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건축선	•도로(폭원 36.8m, 30m)변에 4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획지경계선부에 3m 건축한계선을 지정	

■ 공공업무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C4-3	C4-3	용도	ㆍ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공공도서관 등)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및 도서관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ㆍ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10층	
		배치	–	
		형태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 •개방감을 주기 위한 투시형 셔터를 1층 벽면의 1/2이상에 설치토록 권장 •지붕형태는 구배가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의 경사지붕을 하도록 권장	
		색채(권장)	•외벽의 색상은 순색(Chromaticness=100)에 가까운 색, 흰색(Whiteness=0)에 가까운 색, 검정(Blackness=100)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인접하는 색과의 색차를 줄이도록 권장 •강한 그래픽, 현란한 색채 등의 사용은 금지 •지붕의 색채는 기조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담장색채는 건축물의 외장색과 색차가 거의 없으면서 돌출되지 않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건축선	•도로(폭원 36.8m, 30m)변에 4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획지경계선부에 3m 건축한계선을 지정	

■ 학교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B1-3 B1-4 C2-2	B1-3 B1-4 C2-2	용도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층수 - 5층	
		배치	-	
		형태	-	
		색채(권장)	•외벽의 색상은 순색(Chromaticness=100)에 가까운 색, 흰색(Whiteness=0)에 가까운 색, 검정(Blackness=100)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인접하는 색과의 색차를 줄이도록 권장 •강한 그래픽, 현란한 색채 등의 사용은 금지 •지붕의 색채는 기조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담장색채는 건축물의 외장색과 색차가 거의 없으면서 돌출되지 않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건축선	•획지 경계부에 3m 건축한계선 지정 (B1-3, B1-4, C2-2) •중1-18호선(폭원 20m)변 7m의 건축한계선 지정 (B1-3, B1-4) •중1-16호선(폭원 20m)변 5m의 건축한계선 지정 (B1-4) •대2-14호선(폭원 30m)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C2-2) •완충녹지변에 5m 건축한계선 지정 (C2-2)	

■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5-2 A7-2	A5-2 A7-2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단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및 종류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및 경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를 불허한다.	
		건폐율	•경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름	
		용적률	•경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름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권장)	•외벽의 색상은 순색(Chromaticness=100)에 가까운 색, 흰색(Whiteness=0)에 가까운 색, 검정(Blackness=100)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인접하는 색과의 색차를 줄이도록 권장 •강한 그래픽, 현란한 색채 등의 사용은 금지 •지붕의 색채는 기조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담장색채는 건축물의 외장색과 색차가 거의 없으면서 돌출되지 않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건축선	•36.8m 도로변에 2m 건축한계선 지정 (A5-2, A7-2) •20m도로변에 2m 건축한계선 지정 (A5-2, A7-2) •보행자도로변에 3m 건축한계선 지정 (A5-2, A7-2) •획지 경계변에 3m 건축한계선 지정 (A5-2, A7-2) ※ 건축한계선은 「건축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선에 해당함	

⑤ 기타시설용지(사회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B2	B2	용도	•허용용도 – 의료시설 중 병원 –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15층	
		배치	–	
		형태	–	
		색채(권장)	•외벽의 색상은 순색(Chromaticness=100)에 가까운 색, 흰색(Whiteness=0)에 가까운 색, 검정(Blackness=100)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인접하는 색과의 색차를 줄이도록 권장 •강한 그래픽, 현란한 색채 등의 사용은 금지 •지붕의 색채는 기조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담장색채는 건축물의 외장색과 색차가 거의 없으면서 돌출되지 않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건축선	•근린공원(건천지) 경계부에 3m 건축한계선 지정 •사업대상지 경계부에서 3m 건축한계선 지정 •20m도로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대로 1-2호선(30m)변에 5m 건축한계선 지정	

■ 문화및집회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B1-2	B1-2	용도	•허용용도 –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배치	–	
		형태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 •지붕형태는 구배가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의 경사지붕을 하도록 권장	
		색채(권장)	•외벽의 색상은 순색(Chromaticness=100)에 가까운 색, 흰색(Whiteness=0)에 가까운 색, 검정(Blackness=100)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인접하는 색과의 색차를 줄이도록 권장 •강한 그래픽, 현란한 색채 등의 사용은 금지 •지붕의 색채는 기조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담장색채는 건축물의 외장색과 색차가 거의 없으면서 돌출되지 않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건축선	•20m도로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12m 도로변에서 3m 건축한계선 지정 •획지 경계변에 3m 건축한계선 지정	

바) 교통처리계획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①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 주거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B1-1	B1-1	차량 출입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교통영향평가와 상이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우선으로 한다.	
		주차장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및 경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상에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라야 한다. •지하주차장 설치 비율은 경산시 주차장조례를 따른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상에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라야 한다.	

■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1-2 C1 C2-1 C3 C4-1 C5	A1-2 C1 C2-1 C3 C4-1 C5	차량 출입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교통영향평가와 상이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우선으로 한다.	
		단지내 도로	•두개의 단지가 서로 마주보고 차량출입구가 설치될 경우에는 가급적 출입구의 위치를 일치시키도록 한다. •당해 주택단지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 자 또는 '+'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주차장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및 경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상에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라야 한다. •지하주차장 설치 비율은 경산시 주차장조례를 따른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상에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라야 한다.	
		공공 보행 통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블록내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블록은 시행지침에 의거 보행자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블록내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않은 블록은 자유롭게 보행자통로를 조성하되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시설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함	

■ 상업 · 업무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1-1 A1-3 A2-1 A2-2 A3 A4 A5-1 A6-1 A6-2 A7-1	A1-1 A1-3 A2-1 A2-2 A3 A4 A5-1 A6-1 A6-2 A7-1	보행 출입구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물 주출입구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한다.	
		차량 출입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에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교통영향평가와 상이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우선으로 한다. •차량출입구가 지정되는 않은 필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한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및 경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상에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라야 한다.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한다.	
		공공 보행 통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블록내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블록은 시행지침에 의거 보행자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블록내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않은 블록은 자유롭게 보행자통로를 조성하되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시설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함	

■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학교,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5-2 A7-2 B1-3 B1-4 C2-2 C4-2 C4-3	A5-2 A7-2 B1-3 B1-4 C2-2 C4-2 C4-3	차량 출입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교통영향평가와 상이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우선으로 한다.	
		주차장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및 경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상에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라야 한다.	
		공공 보행 통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획지는 시행지침에 의거 보행자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않은 획지는 자유롭게 보행자통로를 조성하되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시설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함	

■ 기타시설용지(문화 및 집회시설,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B1-2 B2	B1-2 B2	차량 출입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교통영향평가와 상이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우선으로 한다.	
		주차장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및 경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상에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라야 한다.	

②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 주거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B1-1	B1-1	공공조경	•도로와 건축한계선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가로환경 및 주거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지침 상의 식재기준에 의해 식재하도록 함	

■ 준주거용지 (변경있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1-2 C1 C2-1 C3 C4-1 C5	A1-2 C1 C2-1 C3 C4-1 C5	전면 공지		•전면공지는 전면공지가 지정된 가구 및 획지의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전면공지 폭의 2분의 1이상을 보행전용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예시 : 전면공지 폭 4m 일 경우 2m 이상 확보) •보도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기존 보도의 높이와 같고 내구적인 장식포장을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1층 창호 개방시 창호가 전면공지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관련위원회에서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A1-2 C1 C2-1	A1-2 C1 C2-1	공개공지	기정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의해 공개공지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 위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형태와 규모의 적용은 제외한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C3 C4-1 C5	C3 C4-1 C5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경산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으며,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가) 진입구의 설치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용이하도록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진입구로 확보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기준 - 공개공지는 최소 60㎡이상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식재 및 시설물의 기준은 경산시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의해 공개공지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 위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형태와 규모의 적용은 제외한다.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경산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으며,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가) 진입구의 설치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용이하도록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진입구로 확보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나) 시설기준 - 공개공지는 최소 60㎡이상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식재 및 시설물의 기준은 경산시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가 중복 지정된 부분의 공공보행통로 내 보행전용공간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식재 및 시설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공공 조경		•도로와 건축한계선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가로환경 및 주거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지침 상의 식재기준에 의해 식재하도록 함	
		차폐 조경		•간선도로변 완충녹지와 건축한계선에 지정된 차폐조경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지침 상의 식재기준에 의해 식재하도록 함	

■ 상업 · 업무용지 (변경있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1-1 A1-3 A2-1 A2-2 A3 A4 A5-1 A6-1 A6-2 A7-1	A1-1 A1-3 A2-1 A2-2 A3 A4 A5-1 A6-1 A6-2 A7-1	전면 공지	•전면공지는 전면공지가 지정된 가구 및 획지의 전면 도로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전면공지 폭의 2분의 1이상을 보행전용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예시 : 전면공지 폭 4m 일 경우 2m 이상 확보) •보도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기존 보도의 높이와 같고 내구적인 장식포장을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1층 창호 개방시 창호가 전면공지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관련위원회에서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	기정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의해 공개공지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 위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형태와 규모의 적용은 제외한다.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경산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으며,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가) 진입구의 설치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용이하도록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진입구로 확보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기준 - 공개공지는 최소 60㎡이상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식재 및 시설물의 기준은 경산시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의해 공개공지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 위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형태와 규모의 적용은 제외한다.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경산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으며,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가) 진입구의 설치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용이하도록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진입구로 확보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기준 - 공개공지는 최소 60㎡이상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식재 및 시설물의 기준은 경산시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가 중복 지정된 부분의 공공보행통로 내 보행전용공간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식재 및 시설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공공 조경		•도로와 건축한계선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가로환경 및 주거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지침 상의 식재기준에 의해 식재하도록 함	

■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학교,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5-2 A7-2 B1-3 B1-4 C2-2 C4-2 C4-3	A5-2 A7-2 B1-3 B1-4 C2-2 C4-2 C4-3	전면공지	•전면공지는 전면공지가 지정된 가구 및 획지의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전면공지 폭의 2분의 1이상을 보행전용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예시 : 전면공지 폭 4m일 경우 2m 이상 확보) •보도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기존 보도의 높이와 같고 내구적인 장식포장을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1층 창호 개방시 창호가 전면공지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관련위원회에서 인정한 옥외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공조경	•도로와 건축한계선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가로환경 및 주거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지침 상의 식재기준에 의해 식재하도록 함	
		차폐조경	•간선도로변 완충녹지와 건축한계선에 지정된 차폐조경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지침 상의 식재기준에 의해 식재하도록 함	

■ 기타시설용지(문화 및 집회시설,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B1-2 B2	B1-2 B2	전면공지	•전면공지는 전면공지가 지정된 가구 및 획지의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전면공지 폭의 2분의 1이상을 보행전용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예시 : 전면공지 폭 4m일 경우 2m 이상 확보) •보도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기존 보도의 높이와 같고 내구적인 장식포장을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1층 창호 개방시 창호가 전면공지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관련위원회에서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공조경	•도로와 건축한계선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가로환경 및 주거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지침 상의 식재기준에 의해 식재하도록 함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제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고시정보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053-810-55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안동시 공고 제2023-4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53)]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안동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53)]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동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른 공람 및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공람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6일

안 동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규모	사 업 구 간		도시계획 지정승인근거
		시 점	종 점	
송현소로(2-153) 개설공사	도로개설 L=70.0m B=8.0m	송현동 383-9	송현동 384-28	안동시 고시 제1995-15호 (1995. 06. 12.)
				안동시 고시 제2022-234호 (2022. 12. 29.)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사업의 명칭 : 송현소로(2-153)개설공사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 : 안동시장

6. 관계도서 및 기타 : 게재 및 공람장소 비치

7.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 054-840-5408)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동	당초	편입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종류	성명	
1	송현	384-28	384-28	도	713	651	송현동 382-11	오○포 외 1인			
2	송현	527-3	527-3	답	4	2	공	안동시			
3	송현	526-15	526-15	전	7	2	공	안동시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규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시	동	지번					주소	성명	
1	안동	송현	384-28	울타리	나무목재	21	m	송현동 382-11	오○포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 3. 6.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감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김천시장(도로철도과)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의리 1777-1번지 일원 면적 : 15,664㎡ / 일시 28,534㎡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감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시설개요 : - 개량형 PSC거더교(L=378.8m, B=12.0m) - T형교각(8개소, D=2.5m), 역T형교대 1개소(B=12.0m, H=4.5m) - 단일현장타설말뚝 8개소(D=2.5m, L=35.4~54.4m), 합성말뚝 15본(600×90T, L=23.5m) - 교량받침 : 탄성받침 (80EA),

	신축이음장치 : Finger-Type (3개소 유간 80~200mm) - 방호벽형식 : 강재 방호책 L=378.8 × 3EA, 초기우수처리시설 : 장치형 1개소 - 세굴방지블럭 : 7개소 B=14~17m L=19.6~24.5m - 교대 L형옹벽 : L=8m H=3~4m 2개소, 교대보호공 사석 : A=523㎡ - 교량횡단구간 호안블럭 : L=10m B=42m, 영구시트파일 : L=42m, H=15mm - 가교(L=40.1m, B=10.3m), 가도(L=210.9m, B=10m)
점 용 기 간	2023년 3월 6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 3. 6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구미시장(하천과)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380번지 일원 면적 : 196.86㎡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낙동강 둔치 화장실 오수펌프장 설치공사 ○ 시설개요 : 화장실 오수펌프장 설치 - 급수관로(D=40㎜, L=417m) - 오수관로(D=80㎜, L=146m), (D=200㎜, L=567m) - 1호오수맨홀(D900, 8개소), 오수펌프장(D2100, 1개소)

	- 포장(콘크리트, 아스콘, 비포장) - 신설화장실(2.7×9.0×3.4, 2개소) - 오수펌프장 판넬기초 설치(1.0×0.8×0.5, 1개소) - 관보호공(L=567m)
점 용 기 간	2023년 3월 7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22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 3. 6.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칠곡군수(시설관리사업소)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1580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1번지 외 123필지 일원 면적 : 148,062㎡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수변레저공원 조성 ○ 시설개요 : 수변레저공원 야외물놀이장 조성 ① 다목적광장(12,550㎡) ② 물놀이장(17,000㎡) - 신규도막방수:유수풀(3,163.62㎡), 어린이풀(1,201.66㎡), 유아풀(547.45㎡)

	③ 백사장(모래축구장, 리버발리볼, 14,586㎡), ④ 물결광장(5,850㎡) ⑤ 잔디마당(13,650㎡), ⑥관리동 3개소[이동식(관리동, 매표소, 전기관리)] ⑦ 샤워장 2개소(240.8㎡), ⑧ 탈의실(9,000×2,650×H3,400) 4개소(이동식) ⑨ 화장실 6개소(이동식), ⑩ 파고라(막구조 1개소), ⑪ 연꽃원 1개소(1,390㎡) ⑫ 산책로 B=2.0m, L=1,365m, ⑬ 메쉬휀스(물놀이장)(W2.0*H1.05) 270경간 ⑭ 메쉬휀스(발란싱탱크)(W2.0*H1.95) 37경간, ⑮ 안개풀 1개소(85.8㎡) ⑯ 유수풀 안전휀스 H=1.0M, L=260M ⑰ U형볼라드 210개소, 카스토퍼 L=360M, ⑱ 푸드트럭 4개소
점 용 기 간	2019년 4월 21일부터 2024년 4월 20일까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